

# 「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9월 28일, 이창열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창열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,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및 농업·농촌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(제2조)
- 지원사업에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 추가(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 '청년농업인'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하고,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살리고자 지원대상으로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

있으나 '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고,

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청년세대의 감소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조례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관련 입법례로,

청년농업인의 나이를 49세까지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6곳이 있습니다.

(광주광역시, 창원시, 익산시, 옥천군, 장수군, 무주군)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 위반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**두고**”를 “**두고 실제**”로, “**45세**”를 “**49세**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
7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    가. (생   략)</p> <p>    나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<u>45세</u> 이하인 사람</p> <p>3. (생   략)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6. (생   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    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나. ----- ----- <u>두고 실제</u> ----- ----- <u>49세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</u></p> <p>7. <u>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